



포항시

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

☞ 전체

중소·강소기업 중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우수기업의 근로환경개선 지원과 기업체 근로자 사기진작으로 지역 인재들의 역외 유출방지와 지속적인 고용 창출 유도

지원 대상

- 신규 고용실적이 우수한 중소기업

지원 내용

- 고용실적에 따른 근로환경개선 차등지원(20~60백만원)
(고용지수 산식) 청년채용인원*(1점) + 중장년채용인원*(0.5점)
(지원금액) 3점 이상 ~ 4점 이내 : 20백만원(단, 50인 이하 소규모 기업)
- 5점 이상~9점 이내 : 30백만원 - 10점 이상~14점 이내 : 40백만원
- 15점 이상~19점 이내 : 50백만원 - 20점 이상 : 60백만원
(근로환경개선) 기숙사 식당, 휴게실 등 개선사업

신청 방법

- 우편, 방문접수

문의 처

- (재)경상북도경제진흥원 경북일자리종합센터 ☎ 054)470-8594
- 포항시 일자리경제노동과 ☎ 054)270-2478



근로복지공단

일자리 안정자금

☞ 전체

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인건비 지원

지원 대상

- (원칙)30인 미만 고용 사업장
- (예외)공동주택 경비·청소, 사회적기업, 장애인직업재활시설, 자활기업 등
* 월 보수액 215만원 이하인 노동자(1개월 이상 고용 유지)
* 지원제외 : 과세소득 3억 이상 고소득 사업주, 재정지원 사업주, 특수관계인

지원 금액

- 5인 미만 1인당 월 최대 11만원, 5인 이상 1인당 월 최대 9만원
※ 단시간 노동자 근로시간 비례 지급

신청 방법

- 온라인(원칙) : 사회보험 3공단 EDI 시스템,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
* 일자리 안정자금(<http://jobfunds.or.kr>)
- 오프라인 : 사회보험 3공단, 고용센터, 방문, 우편, 팩스

문의 처

- 근로복지공단 고객상담센터 ☎ 1588-0075
-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☎ 054)288-5119

근무체계 개편 또는 새로운 직무 개발 등을 통해 전일제 근로자보다 짧게 일하며 고용이 안정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

지원대상

- 시간선택제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,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

지원내용

- 신규 고용한 근로자수 1명당 월 60만~70만원 지원
(1년 범위 내 3개월 단위 지급)

| 구분 | 1개월 지원금액 | 총 지원금액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
| 우선지원 대상 중견기업 | 70만원 (간접노무비 10만원 포함) | 840만원 |
| 대규모기업 | 60만원 | 720만원 |

※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% 한도로 지원

※ 직전 보험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% 이내로 지원(10인 미만 3명)

신청방법

- 사업주가 신청(심사 후 승인)

문의처

- 포항고용복지플러스센터 ☎ 054)280-3051, 3056



소속 근로자가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지원

지원 대상

- (임금감소액 보전금) 모든 사업주
- (간접노무비) 우선지원대상기업 · 중견기업
- (대체인력 인건비) 모든 사업주

지원 내용

- 근로자 1인당 1년 범위 내 지원

| 구 분 | | 1개월 단위 | 연간총액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|
| 임금감소 보전금 | 모든 기업 | 최대 40만원 | 480만원 |
| 대체인력 인건비 | 우선지원대상기업 | 60만원 | 720만원 |
| | 대규모기업 | 30만원 | 360만원 |
| 간접노무비 | 우선지원대상기업, 중견기업 | 20만원 | 240만원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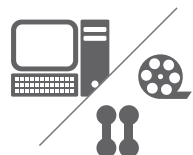
※ 임신을 사유로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근로시간 관계없이 월 40만원 한도 지원

신청 방법

- 사업주가 신청

문의 처

- 포항고용복지플러스센터 ☎ 054)280-3000, Fax 0505-130-3005



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여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제도

지원대상

-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, 중견기업
- 사업주가 아래 대상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하여 1개월 이상 고용 유지
 -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 2년 이내인 기간제 · 파견 · 사내하도급 근로자
 - 6개월 이상 상시적 노무를 제공한 특수형태 업무종사자

지원내용

- 임금증가액 : 전환 근로자 1인당 임금 상승분의 80%(월 최대 60만원)을 1년간 지원
- 간접노무비 : 임금 수준과 상관없이 1인당 월 30만원을 1년간 지원

신청방법

- 사업주가 신청(심사 후 승인)

문의처

- 포항고용복지플러스센터 ☎ 054)280-3000, Fax 0505-130-3005

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곤란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여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 촉진

지원 대상

- 모든 사업주
 -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(취업성공패키지 유형 참여 등)을 이수하고, 고용센터 등에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유지
 - ※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자(중증장애인, 여성가장, 도서지역 거주자 등)는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

지원 내용

- 신규 고용한 근로자수 1명당 월 30만~60만원 지원(1년 범위 내 6개월 단위 지급)

| 구분 | 6개월 지원금액 | 연간 총액 |
|---------|----------|-------|
| 우선지원 대상 | 360만원 | 720만원 |
| 대규모기업 | 180만원 | 360만원 |

- ※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% 한도로 지원
- ※ (지원한도)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%

신청 방법

- 사업주가 신청(6개월 단위 지급)

문의처

- 포항고용복지플러스센터 ☎ 054)280-3000, Fax 0505-130-3005

시차출퇴근제 · 선택근무제 · 재택근무제 · 원격근무제 등의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하고,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제도를 활용하게한 사업주에게 간접 노무비와 인프라 구축비용의 일부 지원

지원 대상

- 고용안정장려금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받고,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유연근무를 활용토록 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

| | |
|---------|---|
| 시차 출퇴근제 |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|
| 선택근무제 |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|
| 재택근무제 |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|
| 원격근무제 | 주거지,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 |

* 근로조건 : 소정근로시간이 주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일 것

지원 내용

- 활용근로자 1인당 연 최대 520만원 지원(1년 범위 내 지급)

| 기준 | 연간총액 | | 1주당 지급액 | |
|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--|-------|
| | 주3회 이상 | 주1~2회 | 주3회 이상 | 주1~2회 |
| 지원금액 | 520만원 | 260만원 | 10만원 | 5만원 |

* 선택근무제는 활용 횟수 산정없이 활용 근로자 1인당 1주에 10만원 지원

신청 방법

- 사업주 신청 (심사, 승인)

문의 처

- 포항고용복지플러스센터 ☎ 054)280-3000, Fax 0505-130-3005

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대체인력 활용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제도

지원 대상

지원 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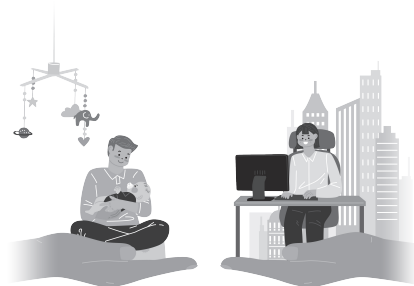
| 구분 | 지원대상 및 요건 | 지원내용 |
|-----------|--|---|
| 육아휴직 등 부여 | 육아휴직(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)을 30일 이상 부여하고, 종료 후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육아휴직 부여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1년간 지원(사업장에서 최초 육아휴직자인 경우 40만원) ·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, 대규모기업 근로자 1인당 10만원을 1년간 지원 |
| 대체인력 지원금 | 출산전후 (유산·사산) 휴가, 육아휴직 (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)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고,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고용한 사업주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지원기간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기간 중 대체인력을 채용한 기간 + 인수인계기간 2개월 · 지원수준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1인당 월 80만원(인수인계 기간은 월120만원), 대규모기업 근로자 1인당 월30만원 지원 |

신청 방법

- 사업주 신청

문의 처

- 포항고용복지플러스센터 ☎ 054)280-3000, Fax 0505-130-3005



경기의 변동·산업구조의 변화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, 휴직 등 고용 유지조치를 실시하고, 고용유지조치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임금(수당)을 지급하는 경우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사업주의 경영 부담 완화 및 근로자 실직 예방

지원대상

-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
 - 고용유지조치의 실시

| | |
|----|--|
| 휴업 | 1개월의 단위기간 동안 당해 사업장의 전체 피보험자의 총근로시간이 20/1000이 초과 되도록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시간 조정, 교대제 개편,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 |
| 휴직 |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게 계속하여 1개월 이상의 유급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|

- 계속고용 의무 준수

*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그 이후 1개월까지 당해 소속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는 사업주

지원내용

| | |
|----|--|
| 휴업 |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 2/3(대규모기업 1/2) 지원. 1일 한도 6.6만원 ※ 단, 대규모기업이 근로시간 단축률 50% 이상인 경우 2/3 지원 |
| 휴직 | 사업주가 지급한 휴직수당 2/3(대규모기업 1/2) 지원. 1일 한도 6.6만원 ※ 단, 대규모기업이 근로시간 단축률 50% 이상인 경우 2/3 지원 |

※ 보험연도의 기간 중 180일까지 지원(휴업:휴직 동시 실시하는 경우 1일로 봄)

신청방법

- 사업주 신청(1개월 단위)

문의처

- 포항고용복지플러스센터 ☎ 054)280-3070

사업주가 비용을 부담하여 소속근로자, 채용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직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

지원 대상

- 실시주체 :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
- 실시대상 : 만15세 이상 근로자(사업주는 훈련대상 비해당)

지원 내용

- 지원한도 : 훈련 지원금은 해당연도 고용보험료 중 고용안정, 직업능력개발 사업 보험료의 100% (우선지원대상기업은 240%)지원
- 훈련종류 : 위탁훈련, 자체훈련, 집체훈련, 현장훈련, 인터넷원격훈련, 혼합 훈련
- 훈련종류별 지원금

| 훈련방법 | 훈련비 | 훈련수당 | 임금의 일부 | 숙식비 |
|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|--------|-----|
| 집체훈련 | ○ | ○ | ○ | ○ |
| 현장훈련 | ○ | ○ | X | ○ |
| 원격훈련 (인터넷/원격) | ○ | X | X | X |

- 표준훈련비(직종별기준단가×훈련시간×훈련인원)×지원비율

| 기업구분 | 지원율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
| | 자체훈련 | 위탁훈련 |
| 우선지원 대상기업 | 100% | 90% |
| 상시근로자 1,000인 미만 (우선지원 대상기업 제외) | 60% | 60% |
| 1,000인 이상 | 50% | 40% |

신청 방법

- HRD-NET(www.hrd.go.kr)온라인 또는 팩스

문의 처

-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동부지사 직업능력개발팀 ☎ 054)230-3200



근로시간 줄이기로 기존 일자리에 더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만든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

지원대상

- 교대제 도입, 실 근로시간 단축, 주 근로시간 단축, 일자리 순환제 등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

지원내용

- (신규채용 인건비) 증가 노동자 수 1인당 월40~100만원, 1~3년 지원
- (인력감소분 보전) 사업주가 재직근로자의 임금 감소분을 보전할 경우 월 최대 40만원, 1~3년 지원
 - * 사업주 보전임금의 80% 한도
 - * 증가 노동자 수 1인당 기존 재직자 10명까지 지원(버스업종 20명)

신청방법

- 주 근로시간 단축제 : 비공모형
- 실 근로시간 단축, 교대제, 일자리 순환제 : 공모형

문의처

- 포항고용복지플러스센터 ☎ 054)280-3000, Fax 0505-130-3005



내국인을 채용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(E-9비자)의 고용을 지원(업무대행)

지원대상

-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

지원내용

- 고용기간 : 최대 4년 10개월 (3년+1년10개월)
 - ※ 성실근로자 제도 및 특별한국어 시험 제도를 통해 재입국 근로 가능
- 대상국가 : 인도네시아, 네팔, 캄보디아, 우즈베키스탄, 키르기스스탄, 스리랑카, 방글라데시, 필리핀, 파키스탄, 미얀마, 동티모르, 베트남, 태국, 몽골, 중국, 라오스 (총 16개국)
- 업무대행 내용 :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, 사증발급신청서 신청, 취업교육 등
 - ☞ 뿌리산업(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)은 고용허용인원의 20%까지

신청방법

- 우편, 팩스 또는 방문신청(www.kbiz.or.kr)

문의처

-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 ☎ 053)524-2110



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을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함께 근로자의 국내 여행 경비 지원

지원 대상

- 중소기업, 소상공인, 비영리 민간단체, 사회복지법인 근로자
- * 신청은 기업 단위(개인신청, 기업대표자는 참여 불가)

지원 내용

-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여행적립금 조성 후, 정부 추가지원
[여행경비(40만원) = 근로자(20만원)+기업(10만원)+정부(10만원)]
- * 적립금 사용 : 전용 온라인몰 '휴가#' 에서 여행 관련 상품 구입

신청 방법

- 기업 단위 온라인 신청(vacation.visitkorea.or.kr)

문의 처

- 한국관광공사 전담지원센터 ☎ 1670-1330



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(고용보험·국민연금)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 주고,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

지원 대상

-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15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
- ※ 단, 전년도 과세표준액 합계 6억 이상인자, 근로소득 연 2,838만원 이상, 근로소득 제외한 종합소득 연 2,100만원 이상인자 제외

지원 내용

- 사회보험료(고용보험·국민연금)를 최대 90%까지 각각 지원
- 신규지원자 : 1~4인 90%, 5~9인 80%
- 기지원자 : 30% 지원

신청 방법

- 온라인 :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(www.4insure.or.kr)
- 오프라인 : 방문, 우편, 팩스

문의 처

-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☎ 1588-0075
-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☎ 1355

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이나 영세상공인, 저신용·저소득자 등을 대상으로 신용회복 지원, 채무조정 등 금융 상담서비스 제공

지원 대상

- 사업별 대상요건 충족자(요건 충족여부는 문의처 연락)

지원 내용

- 자금지원
 - 미소금융, 햇살론, 바뀐드림론 등 서민금융상품 상담, 지원
- 채무조정지원
 - 과중한 채무로 힘든 분들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개인워크아웃, 프리워크아웃 등 지원, 법원의 개인회생, 개인파산 연계 지원
- 종합상담
 - 1:1신용 재무상태 진단, 노후설계, 재산형성 지원, 창업·운영 컨설팅 등을 포괄적으로 상담
- 고용·복지연계
 - 지자체, 고용·복지부 등과 연계하여 일자리 상담·취업안내, 복지서비스 제공

신청 방법

- 방문 상담(www.cofs.or.kr) / 포항고용복지플러스센터 4층

문의 처

-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☎ 1397